

문서번호	재무과-735
결재일자	2016. 1. 13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보도여부	

★주무관	계약팀장	재무과장	기획재정국장	부구청장
김근숙	지우경	김영모	이상형	01/13 하철승
협 조				

2016년도 주민참여감독자 제도 운영 계획

「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에 주민참여감독자 제도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, 주민 대표가 직접 시공과정에 참여하여 불법·부당행위 감시 및 공사 감독을 하게 함으로써 사업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.

근거 법령

-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
-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~제63조
-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

주민참여감독자 운영 개요

■ 대상 공사 금액 범위

-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 공사(의무사항 - 수당 지급)
- ※ 연간단가계약 공사는 건별로 적용
-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 공사(임의사항 - 수당 미지급)

■ 대상 공사 종류

- 마을진입로 확·포장 공사
- 배수로 설치 공사
- 간이 상·하수도 설치 공사
- 보안등 공사
- 보도블럭 설치 공사
-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
- 마을회관 공사
- 공중화장실 공사
-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, 도로,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공사
-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

2016년도 주민참여감독자 제도 운영 계획

2016. 1. 12.

강 북 구

주민참여감독자 감독 범위

-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달
- 시공과정의 불법·부당행위에 대한 시정 건의
-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의 감독
 - ※ 감독자의 시정 건의 내용이 관련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부적정한 경우, 혹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감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음

세부추진계획

1 주민참여감독자의 위·해촉

■ 주민참여감독자의 추천 - 발주부서

- 추천시기 : 공사 착공후 7일 이내
- 추천인원 : 1명(공사 범위가 넓을 경우 다수 추천 가능)
- 추천방법 : 공사담당 공무원이 감독대상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통장의 추천서(붙임 1호 서식)를 받아 자격여부 검토 후 재무과로 통보
- 주민대표자(통장)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 기준
 - ▶ 감독 대상 공사의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
 - ▶ 감독 대상 공사의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 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였거나 감리·감독 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
 - ▶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교수 또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초·중등학교 교사로서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
 - ▶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·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건설 관련 단체 또는 건설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
 - ▶ 감독 대상 공사의 현장이 속하는 동의 새마을지도자·부녀회장 등으로서 대표성과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

■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- 발주부서

- 위촉시기 : 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
- 위촉방법 : 공사담당 공무원이 재무과로부터 위촉 번호를 받은 후(결재시 협조)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임무 및 관련사항 전달 후 위촉장(붙임 2호 서식) 교부

■ 주민참여감독자의 해촉 - 발주부서

- 해촉 시기 : 공사 준공과 동시 해촉
 - ※ 단, 해촉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문서로 통보 후 즉시 해촉
- 해촉 사유
 - ▶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한 경우
 - ▶ 주민참여감독자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▶ 감독 또는 검사 시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
 - ▶ 공사감독일지 등 감독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
 - ▶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
2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업무 수행

- 감독일수 : 대상공사의 특수성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발주부서에서 자체 계획 수립하여 감독 일수 및 시기 정함
- 감독방법 : 감독일지(붙임 3호 서식)에 의거 감독업무 수행(단, 감독업무 수행 중 의견 및 건의사항 등 수시 제출)
- 감독결과 제출 : 감독자는 준공과 동시에 감독일지를 발주부서에 제출
 - ※ 발주부서에서는 감독일지 사본을 준공감독조서와 함께 재무과로 제출
- 제출된 감독사항 처리 :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사항 및 의견, 건의 사항 등은 발주부서에서 접수하여 반영 여부 등 검토 후 처리

3 주민참여감독자의 수당 지급

- 예산 확보 및 집행 : 감독수당은 연간 공사 규모 등을 감안하여 발주부서에서 편성(시설부대비) 및 집행
- 감독수당 지급기준 : 1회(주요공정 감독시) **30,000원**(개정 2015. 11. 20.)

행정 사항

- 시행기준일 : **2016. 1. 1. 이후** 계약하는 해당 공사[소급 적용]
- 공사착공후 **7일 이내** : 발주부서는 재무과로 주민참여감독자 통보
- 공사착공후 **15일 이내** : 발주부서는 재무과에서 위촉번호 부여받은 후 위촉장 교부
- 준공후 : 발주부서는 **감독일지 사본을 준공감독조서와 함께 재무과로 제출**

- 붙 임 1. 주민참여감독자 추천서 양식 1부.
2. 주민참여감독자 위촉장 양식 1부.
3. 주민참여감독자 감독일지 양식 1부. 끝.